

노들섬 특화공간 대관규정

제정 2019.08.05.

개정 2019.12.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노들섬 특화공간 운영자인 어반트랜스포머 컨소시엄(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노들섬 특화공간(이하 “노들섬”이라 한다)의 시설 대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규정에 따라 노들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할 수 있는 대관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각 시설에 부가된 공간·장치·장비·매체 등을 의미한다.

1. 실내 공간 : 라이브하우스, 다목적홀 숲, 기타 공간(노들서가, 뮤직라운지 류) <개정 2019.12.13.>
2. 옥외 공간 : 잔디마당, 노들스퀘어, 노들스탠드, 기타 옥외 공간(라이브하우스 뜰, 다목적홀 뜰, 마켓 뜰, 서가 뜰, 서가 루프탑, 숲 루프탑, 테라스) <개정 2019.12.13.>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란 함은 제2조에 해당하는 대관 시설에서 진행되는 공연, 전시, 워크숍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대관”이란 제2조에 해당하는 대관 시설을 대관 사용자가 행사를 위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시설 및 설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대관 사용자”란 함은 본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신청절차를 이행한 후 운영자의 대관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사용 권한을 취득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대관 승인”이란 본 규정에 따라 운영자가 대관을 신청한 자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시설 사용을 허락한 경우를 말한다.
5. “대관료”란 함은 대관 시설의 사용에 따른 기본대관료, 부대시설사용료 등 대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6. “대관 계약”이란 함은 본 규정에서 정한 계약금 또는 대관료를 대관 사용자가 납부한 후 대관계약서에 상호 날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대관의 종류) ① 신청 시기에 따른 대관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정기대관”이란 일정 기간 내 공개모집을 통해 일괄 신청받아 시행하는 대관을 말하며, 시기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자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단, 정기대관은 대관 시

설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2. “수시대관”이란 정기대관 공모를 통해 시행하지 않는 대관을 말한다.

② 대관료 산정방식에 따른 대관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대관”이란 기본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등 본 규정에서 정한 대관료 산정방식으로 신청한 대관을 말한다.

2. “공공대관”이란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관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관을 말한다. <개정 2019.12.13.>

3. “기획대관(기획공연)”이란 운영자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행사를 제작하고 대관 시설 등을 제공(투자)하여 티켓매출 또는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의 행사를 말하며, 세부 조건은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③ 사용 목적에 따른 대관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공연(행사)대관”이란 공연, 전시 등 “행사”를 위한 대관을 말한다.

2. “준비대관”이란 행사를 위해 장비와 물품 설치 등의 준비를 위한 대관을 말한다. 단, 행사 리허설은 준비대관할 때에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철수대관”이란 행사가 종료된 후 대관 사용자가 설치했던 장비 또는 물품의 철거를 위한 대관을 말한다.

제5조(대관심의위원회) ① 운영자는 대관 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대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자 대표 중 1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직으로 운영자의 대표들이 합의하여 위촉하고, 심의방법은 신청 건별 승인가부제로 한다.

④ 정기대관은 3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심사하며, 그 외 대관은 자체 심의에 의한다. <개정 2019.12.13.>

⑤ 단체나 개인 간의 신청 기간이 경합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공연단체나 공연자 순으로 결정한다.

제6조(대관 우선 배정) 노들섬 시설 활성화 및 대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을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우선 배정이 필요한 행사의 결정은 제5조에 따라 대관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 대관 시설별 권장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행사

2. 운영자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는 행사 또는 노들섬 활성화 프로그램과의 협력 행사

3. 국내외 우수 행사로 시설 활성화를 위해 유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제2장 대관절차

- 제7조(대관 신청) ① 대관 사용자는 행사 개최 전 노들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관 행사의 특성과 운영 상황에 따라 이메일을 통한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 ② 대관 공고는 노들섬 홈페이지를 이용하되,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다른 매체에 공고할 수 있다.
- ③ 대관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관 계약 후 부대시설 사용 신청은 운영자가 정한 별도 서류에 따른다.

- 제8조(대관 승인 및 계약) ① 운영자는 대관 신청 마감 후 별도로 정한 기일 안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대관승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수시대관의 경우는 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유선 통보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대관 사용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운영자와 대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운영자는 대관 승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 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대관 사용자는 운영자가 요구하는 준비 및 철수 대관에 대한 최소한의 일정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관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운영자는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100만 원 이하의 대관료가 예상되는 행사는 대관 계약을 생략하고 대관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대관 승인의 거절 및 취소)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대관 승인을 거절하거나 대관 승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자는 대관 사용자가 입는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특정 종교의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2.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의 행사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4. 대관 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5.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구하는 행사로써 대관 사용자가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운영자가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7. 운영자가 정한 기일 내에 예상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8. 운영자의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입장권 또는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
 9. 대관 행사의 판매상품이 노들섬 내 상업시설의 판매상품과 중복되는 경우
 10. 기타 운영자의 판단으로 노들섬 내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대관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대관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기대관 및 공공대관의 승인 후 취소 또는 일정 등 중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단, 출연자가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명확한 증빙자료와 함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시는 예외로 함.
 2. 수시대관 승인.통보 후 해당 연도에 2회 이상 취소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내용 중 그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대관 내용의 변경) ① 대관 사용자는 대관장소, 대관일정, 행사내용 등의 대관 내용을 운영자가 승인한 내용과 달리할 수 없다. 단, 대관 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운영자에 대관변경신청서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운영자는 내용 변경이 대관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운영자가 별도로 인정한 경우 승인된 대관기간(사용일)의 해당 연도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대관 사용자에 의한 대관취소 등) ① 대관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대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별 대관료 반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3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장 대관료

제1절 통칙

제12조(대관료) ① 대관 시설에 대한 대관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장치 장비 등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 외에 부대시설, 추가 인력 배치 등에 대한 비용은 운영자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대관료의 할인 및 할증)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세부 조건은 각 대관 사용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양해각서를 통해 정한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중 서울시 주관 부서장이 승인하여 대관료 감면을 요청한 행사에 대해서만 대관료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단,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후원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2. <삭제 19.12.13.>

3. 운영자가 협력유치 혹은 후원하는 행사는 대관료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12.13.>

4. 총감독의 승인하에 운영자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 하는 행사는 대관료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5. <삭제 19.12.13.>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대해 대관료를 할증할 수 있다.

1. 기업 홍보 목적이 명백한 행사는 대관료의 150% 할증할 수 있다.

2. 영화, 광고, 방송 등 상업 촬영을 위한 행사는 대관료의 150% 할증할 수 있다.

제2절 라이브하우스 및 다목적홀의 대관료

제14조(라이브하우스 및 다목적홀 숲 대관료의 납부) ① 대관 사용자가 시설물을 대관하기 위해서는 예상대관료를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는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대관 사용자는 대관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예상대관료의 50%를 계약금으로 운영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관료 잔금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개시일 30일 이전에 사전 대표행위를 위한 관람권 발행 시 티켓 발매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관승인일로부터 사용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대관 승인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예상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추가설비 사용료는 운영자가 정하는 별도 지정일까지 정산한다.

⑥ 8일 이상 공연의 경우 매주 월요일은 공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관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단, 대관자의 요청으로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승인할 수 있다.

⑦ 대관 사용자의 사정으로 대관 기간 내 휴관을 할 경우에는 계약기준 대관일에 휴관일을 포함하여 예상대관료를 책정해야 한다.

⑧ 대관 사용자가 추가 대관료 및 부대시설 등을 운영자가 지정한 날까지 미납하였을 경우 본 규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관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라이브하우스 및 다목적홀 숲 대관료 계산방법) ① 라이브하우스 및 다목적홀 숲의 대관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라이브하우스 및 다목적홀 숲의 예상대관료 계산은 행사 준비, 행사 진행 기간, 철거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세부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준비·철수 대관료는 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누어진다. <신규 19.12.13.>
2. 행사 대관료는 1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행사가 진행되는 날은 준비대관료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3. 행사 준비 및 철수 시 사전에 계약된 구간 이외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운영자의 판단으로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철야요금을 시간에 비례하여 부과한다.

제16조(라이브하우스 및 다목적홀 숲 대관료 정산) ① 운영자는 대관에 따른 시설사용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예상대관료와 실제 발생한 대관료를 정산하여 부족한 대관료는 대관 사용자에게 추가 납부토록 조치하고, 예상대관료가 실제 발생한 대관료를 초과하였을 때는 이를 대관 사용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관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대관료의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납부 지정일을 초과할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연리 1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17조(라이브하우스 및 다목적홀 숲 대관료의 반환 및 취소위약금)

- ①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운영자는 납부된 대관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대관 사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대관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각 기간에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운영자는 해당 비율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를 취소위약금으로서 몰취한다. 단, 취소시까지 대관 사용자가 납부하였어야 할 대관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납부된 대관료의 몰취에 더하여 그 미납 대관료를 추가로 징수한다.
 1. 사용개시일로부터 잔여기간이 60일 이상 남은 상황에서 대관을 전부 취소하는 경우 : 전부 취소시까지 납부된 대관료의 50% (단, 사용기간 또는 사용공간의 일부만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기간 또는 공간의 비율만큼 일할 계산)
 2.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이 남은 상황 또는 사용개시일 이후에 대관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는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취소시까지 납부된 대관료의 100%
- ③ 제1항 및 제2항 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운영자는 제5조에 따른 대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3절 옥외 공간의 대관료

제18조(옥외 공간 대관공간의 범위) ① 옥외 공간은 노들마당(잔디마당, 노들스퀘어, 노들스탠드) 및 기타 실외 공간을 말한다. <신규 19.12.13.>

② 옥외 공간은 분할 대관이 불가한 것을 원칙으로 하나 노들스퀘어는 m² 단위로 분할 대관이 가능하다. <신규 19.12.13.>

③ 옥외 공간의 대관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신규 19.12.13.>

구분		면적(m ²)	비고
노들 마당	잔디마당	2,953	
	노들스퀘어	4,038	
	노들스탠드	864	
기타 옥외 공간	마켓 뜰	817	
	서가 뜰	325	
	라이브하우스 뜰	456	
	다목적홀 뜰	251	
	서가 루프탑	533	
	숲 루프탑	516	
	테라스	192	

제19조(옥외 공간 대관료의 납부) ① 대관 사용자가 시설물을 대관하기 위해서는 예상대관료를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는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금 및 잔금의 납입기일은 사용개시일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관승인일로부터 10일 이

내 지정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개시일이 60일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금은 14일 이내, 잔금은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금은 예상대관료의 30%로 한다.

④ 대관 사용자는 잔금에 한하여 대관료의 지급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20조(옥외 공간 대관료 계산방법) ① 옥외 공간 대관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옥외 공간의 기본대관료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간 산정방법: 옥외 공간을 점유하는 기간과 행사 준비 시점부터 철거 기간 완료 시까지의 대관 사용승인 기간 전 구간

2. 세부 산정방법: 전일 대관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음 각 목의 일부 사용료를 징수한다.

가. 3시간 이하는 기본대관료의 35% 징수

나. 3시간 초과 ~ 6시간 이하는 기본대관료의 70% 징수

다. 6시간 초과 시는 기본대관료의 100% 징수

③ 제2항 이외의 관리비 등 부대비용은 별도로 징수한다.

제21조(옥외 공간 대관료 정산) ① 운영자는 대관에 따른 시설사용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납부된 대관료와 실제 발생한 대관료를 정산하여 부족한 대관료는 대관 사용자에게 추가 납부토록 조치하고, 납부된 대관료가 실제 발생한 대관료를 초과하였을 때는 이를 대관 사용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관 사용자가 추가 납부하여야 할 대관료의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납부지정일을 초과할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연리 1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제22조(옥외 공간 대관료의 반환) ① 운영자의 귀책사유 및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문제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운영자는 납부된 대관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대관 사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단,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한 대관료 반환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5조에 의거 대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기본대관료가 300만 원 이하인 야외행사의 경우 기상상태로 인해 행사 진행이 불가하여 대관 사용자가 명확한 증빙자료와 함께 취소 요청할 경우 대관료 반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9조에 의해 대관승인이 취소되거나 시설사용이 중지되었을 때는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23조(옥외 공간 취소위약금) ① 대관 사용자가 대관 승인을 받은 후 대관 신청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소위약금을 징수한다.

1. 계약금만 납부한 후 취소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과 관계없이 계약금 전액 몰취 (단, 취소시까지 대관 사용자가 납부하였어야 할 계약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계약금 상당액을 징수한다.)

2. 잔금까지 납부한 후 취소하는 경우

- 가. 사용개시일로부터 잔여기간이 31일 이상 남은 경우 : 계약금에 기본대관료의 10%를 합산한 금액
- 나. 사용개시일로부터 잔여기간이 16일 이상 30일 이하로 남은 경우 : 계약금에 기본대관료의 30%를 합산한 금액
- 다. 사용개시일로부터 잔여기간이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남은 경우 : 계약금에 기본대관료의 50%를 합산한 금액
- 라. 사용개시일로부터 잔여기간이 6일 이하로 남은 경우 : 계약금에 기본대관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3. 취소위약금은 예상대관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 사용자가 그 대관 신청의 일부만을 취소(대관 기간의 변경도 일부 취소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한다.

1. 계약금만 납부한 후 일부 취소하는 경우

: (계약금-기본대관료에 따른 계약금) + (기본대관료에 따른 계약금 × 취소대관일수/총대관일수)

2. 잔금까지 납부한 후 일부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일로부터 잔여기간이 31일 이상 남은 경우 : 계약금 일부취소위약금 + (기본대관료의 10% × 취소대관일수/총대관일수)

나. 사용개시일로부터 잔여기간이 16일 이상 30일 이하로 남은 경우 : 계약금 일부취소위약금 + (기본대관료의 30% × 취소대관일수/총대관일수)

다. 사용개시일로부터 잔여기간이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남은 경우 : 계약금 일부취소위약금 + (기본대관료의 50% × 취소대관일수/총대관일수)

라. 사용개시일로부터 잔여기간이 6일 이하로 남은 경우 : 계약금 일부취소위약금 + (기본대관료 전액 × 취소대관일수/총대관일수)

5. 기본대관료 외 부대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위약금의 총액은 예상대관료를 초과할 수 없고, 사용개시일로부터 잔여기간에 관계 없이 기본대관료 외 부대사용료 등은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와 대관 사용자가 대관 기간 전에 상호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대관 기간의 변경을 일부 취소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제4절 기타 공간의 대관료

제24조(기타 공간의 범위) ① 기타 공간은 공간의 본 기능이 있지만,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의미한다. <개정 19.12.13.>

② <삭제 19.12.13.>

③ <삭제 19.12.13.>

④ 대관이 가능한 노들섬의 기타 공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12.13.>

구분	면적(m ²)	권장프로그램
----	---------------------	--------

노들서가	1층	211	- 북콘서트 책 판매 기념행사, 세미나 등
	2층	190	
뮤직라운지		395	- 청음회, 음반 발매 기념 전시 및 행사 등

제25조(기타 공간 대관료의 납부) ① 대관 사용자가 시설물을 대관하기 위해서는 예상대관료를 지정한 기일 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는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8일 이상 대관은 매주 월요일은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관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월요일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운영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대관 사용자의 사정으로 대관 기간 내 휴관을 할 때는 계약기준 대관일에 휴관일을 포함하여 예상대관료를 책정해야 한다.

제26조(기타 공간 대관료의 계산방법) ① 기타 공간의 대관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전에 계약된 구간 이외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대관료의 계산은 행사 준비, 행사 진행 기간, 철거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노들마켓 부분 대관의 대관료 산정은 기본대관료의 제곱미터당 기준 가격에 사용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27조(기타 공간 대관료의 반환 및 취소위약금) ①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운영자는 납부된 대관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대관 사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대관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각 기간에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운영자는 해당 비율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를 취소위약금으로서 몰취한다. 단, 취소시까지 대관 사용자가 납부하였어야 할 대관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납부된 대관료의 몰취에 더하여 그 미납 대관료를 추가로 징수한다.

1. 사용개시일로부터 잔여기간이 15일 이상 남은 상황에서 대관을 전부 취소하는 경우 : 전부 취소시까지 납부된 대관료의 50% (단, 사용기간 또는 사용공간의 일부만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된 기간 또는 공간의 비율만큼 일할 계산)

2. 사용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이 남은 상황 또는 사용개시일 이후에 대관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는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취소시까지 납부된 대관료의 100%

③ 제1항 및 제2항 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운영자는 제5조에 따른 대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4장 행사 진행

제28조(행사 진행) ① “행사 진행”이란 행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대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행사

에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을 말한다.

- ② 대관 사용자는 무대 작업 및 행사 진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후 운영자의 관리·감독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 ③ 대관 사용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운영자의 행사 진행에 관한 협조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행사 진행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운영자는 행사를 지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④ 행사와 관련된 진행상의 책임은 대관 사용자에게 있으며 노들섬 내 기본 시설 및 장비의 안전과 관리 등의 일반적인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다.
- ⑤ 대관 사용자는 운영자의 행사 자료 보관 및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행사일까지 포스터 5장을 운영자에 제출한다. 별도 홍보물 제작이 없을 때에는 홍보콘텐츠 인쇄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⑥ 행사 성격에 따라 입장 연령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⑦ 대관 사용자는 대관 행사와 관련한 물품판매(식, 음료 등) 및 홍보 물품 배포용 부스설치 운영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관 사용자는 노들섬에 입주하여 운영하는 모든 상행위에 대한 영업권을 우선 보장하며, 운영자의 허가 없이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대관 사용자가 이에 반하여 그 권리를 침해할 경우, 운영자는 관련 상행위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대관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대관 사용자는 물품 판매계획(품목, 운영 부스 등)에 관한 상세내용을 운영자에 사전 제출하여 협의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운영자는 그 내용이 제1호에서 정하는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을 유보하고 판매 물품에 대한 조정 또는 판매금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 사용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3. 대관 사용자는 노들섬에 입점한 업체가 희망하면 대관 행사 내 노들섬 입점 업체의 물품판매(식, 음료 등) 부스설치에 관하여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라이브하우스 및 다목적홀 숲, 옥외 공간의 행사 진행) 라이브하우스, 다목적홀 숲, 옥외 공간의 행사 진행에 관한 사항은 제28조 및 제31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13.>

1. 라이브하우스 및 다목적홀 숲, 옥외 공간에서 행사 진행 시 대관 사용자는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스텝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스텝 회의의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대관 사용자는 무대 작업일정, 무대기술 전반에 관한 사항, 대관 시설의 장비 사용 계획, 외부 장비 반입 계획, 로비 사용 계획, 객석 운영 계획,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대관 사용자는 스텝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은 사전에 반드시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잔디마당 행사 진행 시 대관 사용자는 행사 14일 전까지 행사계획서 및 시설설치계획서, 재해 대처계획서를 제출하여 운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기타 공간의 행사 진행) 기타 공간에서의 행사 진행에 관한 사항은 제28조 및 제231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13.>

1. 기타 공간에서 행사 진행 시 대관 사용자는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스텝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스텝 회의의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대관 사용자는 행사내용 및 일정, 행사 진행을 위한 홍보물 및 시설물의 설치 등의 행사 진행을 위한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행사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운영사의 대관 담당자가 주최하는 스텝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행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스텝 회의에는 대관 사용자 및 대관 담당자, 공간 매니저가 참석하여야 한다.
 - 다. 대관 사용자는 스텝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일정 등 주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운영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 기타 공간에서 행사 진행을 위한 고려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행사 당일의 진행은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행사종료 마감까지를 말한다.
 - 나. 효율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대관 사용자는 대관 담당자의 행사 진행에 관한 협조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행사 진행에 문제가 있을 시 대관 담당자는 행사 시작을 지연하거나 행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31조(시설물 설치 시 유의사항) ① 대관 사용자는 대관공간에 설치된 기존 시설물에 변경을 가하거나 가설물의 설치 또는 특수한 장비의 반입에 대하여 운영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완료 즉시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여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운영자는 대관 사용자가 반입한 설비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에 드는 비용은 대관 사용자가 부담한다.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의 손상에 대하여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대관 사용자가 대관공간 및 노들섬 내 대관공간 외 장소에 대관 행사와 관련된 홍보, 판촉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운영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대관 사용자가 노들섬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외부 장비 사용을 위하여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대관 사용자의 비용으로 발전차 등의 시설 외 별도 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입장권 및 안전관리, 광고 등

제32조(입장권의 관리) ① 노들섬 모든 행사의 입장권과 교환권 발행은 운영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입장권은 운영자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받지 아니한 입장권과 교환권은 사용할 수 없다.

- ③ 입장권 발행 시에는 판매 개시일 이전에 대관료 전액 납부한 후 운영자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전자예매시스템을 통하여 발권 시에는 검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운영자는 대관 사용자가 운영자의 사전승인 없이 입장권을 판매 개시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 ⑤ 대관 사용자는 운영자가 요청하는 할인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⑥ 라이브하우스 대관 사용자는 전체 입장권 판매량의 30% 이상을 노들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수수료 등 세부 사항은 별도 계약에 따른다.
- ⑦ 라이브하우스의 경우 행사 진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대관 사용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을 하우스티켓으로 유보하며, 그 수량 및 좌석 번호는 다음과 같다.
 - 1. 좌석 공연 : 1층 E열 5~8(4석) / 2층 B열 10~13(4석)
 - 2. 스탠딩 공연 : 2층 B열 10~13(4석)

제33조(입장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통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1.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자
- 2. 위험물 소지자나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 3.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공공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자
- 4. 운영자의 사전승인 없이 상행위하는 자
- 5. 운영자의 검인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
- 6. 기타 행사의 안전 유지를 위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34조(방송 촬영 및 부대 행사 등) ① 대관 사용자가 노들섬에서 행해지는 행사 등을 촬영,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반드시 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행사의 관람에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 ② 대관 사용자는 행사의 촬영, 녹화 또는 방송을 위한 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 운영자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대관 사용자가 행사를 위한 부대 행사(세미나, 판촉, 사인회 등)를 개최하고자 할 때 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광고 및 홍보 등) ① 대관 사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노들섬과 관련된 사항은 제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홍보물 게시, 물품 진열, 판매대 설치 등 광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노들섬 제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하여야 받아야 하며 운영자의 판단으로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장 시설 및 안전 관리

제36조(보험가입) 운영자는 대관 사용자로 하여금 대관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피해에 관한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보험에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가입증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37조(대관 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운영자는 행사의 특성에 따라 대관 사용자에게 무대설치에 대한 구조적 안전을 검토하기 위한 설치물의 종류, 수량, 중량, 디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세내역 및 도면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 사용자는 운영자가 정하는 날까지 행사 전반에 대한 시설지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대관 사용자가 행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 필증을 운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대관 사용자가 임차한 발전차로 외부 조명, 음향 등 전력을 공급하고자 할 때 사용자재의 규격품 사용 등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은 대관 사용자에게 있다.

⑤ 운영자는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특수효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대관 사용자는 운영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하면 무대설치와 관련하여 임시구조물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은 운영자의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대관 사용자에게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8조(관객 안전 및 질서유지) ① 대관 사용자는 관람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반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행사는 대관 사용자는 사전에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 공연 목적의 대관 사용자는 「공연법」 제11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 등에 관한 제반 행정 사항은 대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관 사용자는 행사일 14일 전까지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해대처계획을 운영자 또는 관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긴급상황 발생하였으나 대관 사용자가 조치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긴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처리 비용은 대관 사용자에게 부과한다.

⑤ 행사 및 행사의 준비 또는 철거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대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9조(안전계획) ① 대관 사용자는 노들섬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대하여 1,000명 이상의 관객 유입이 예상될 경우 대관 시설물 사용을 개시하기 전에 행사와 관련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행사일 14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안전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안전계획서는 운영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에 운영자는 대관 사용자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안전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된 안전계획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운영자는 가설물 등의 반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가설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철거하게 할 수 있다.
- ④ 대관 사용자는 운영자가 승인한 안전계획서에 대하여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며, 수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사용의 제한 또는 중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대관 사용자는 운영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0조(원상 복구) ① 대관 사용자는 노들섬의 공간 또는 장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대관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② 대관 사용자는 대관 행사와 관련하여 설치했던 시설물과 장비를 장소사용 기간 내에 철수하고 대관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 ③ 대관 사용자가 제2항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운영자가 이를 대신 처리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대관 사용자에게 부과한다.

제41조(관리의무 및 제3자 손해배상) ① 행사와 관련한 대관 기간 중(준비 기간, 철거 기간 포함) 반입한 물품 및 설비의 관리책임은 대관 사용자에게 있다.

- ② 운영자는 대관 기간 중 행사와 관련하여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대관 사용자는 시설의 안전을 위해 야간 및 심야시간대에 실시하는 준비, 철거작업 시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한다.
- ④ 대관 사용자는 운영자가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부터 장소사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운영자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관 사용자는 운영자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⑤ 운영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공간에 대한 상태(우천 시, 잠재적 위험요소 등)를 고지를 받았을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고 행사 진행 시 발생한 문제에 책임은 대관 사용자에게 있다.

제7장 양도 및 전대금지 등

제42조 (양도 및 전대금지) 대관 사용자는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그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43조 (법정사항 준수) 대관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집회, 공연 등에 관한 신고, 승인 등

일체의 법정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4조 (계약 내용 준수) 대관 사용자는 대관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의 유지관리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본 규정 및 대관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5조 (규정의 적용) 세부 규정이 다른 다수 대관공간을 같은 대관 사용자가 동시에 대관할 때에는 노들마당, 라이브하우스 및 다목적홀 숲, 기타 옥외 공간, 기타 공간의 순서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6조 (규정의 효력) 본 규정은 운영자와 대관 사용자 간 계약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47조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운영자의 관련 규정과 관계 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제48조 (관할법원) 본 규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운영자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49조 (규정 위반 시의 책임) 본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12.13.>

제2조 (대관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 사용 승인받은 것은 이 규정에 따라 사용 승인된 것으로 본다. <신규 2019.12.13.>

제3조 (대관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 사용 승인받은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대관료를 적용한다. 다만, 운영사와 협의 시 개정 후 대관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 2019.12.13.>